

## 『외환거래기본약관』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6. 09. 05 (월)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 1 조- 제 5 조 (기재생략)	제 1 조- 제 5 조 (현행과 동일)	
제 6 조(수수료, 비용 및 손해의 부담) ①~② (현행과 동일) ③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간접손해, 예상수익, 기타 특별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	제 7 조(수수료, 비용 및 손해의 부담) ①~② (현행과 동일) ③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,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은행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.	금감원 약관 변경 권고
제 7 조- 제 8 조 (기재생략)	제 7 조- 제 8 조 (현행과 동일)	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: 비적용